

·'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수정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12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2월 5일

3. 제안 이유

- 1998. 11. 5 제154회 임시회의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(임야취득) (안)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였으나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을 사전선정하지 않음에 따라 매입예정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사항 미비로 유보된 바 있어 매입대상 임야를 1999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수정(안) (7-2)호와 같이 선정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4. 주요 골자

【 재산의 취득 】

- 도유임야 매입 -

-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(안)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(7-1) 및 199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의 수량 450,000㎡, 금액 400,000천원을 수량 1,079,787㎡(8필지)중에서 금액 390,000천원 범위에서 매입하고자 함.

- 위 치 :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산49-1 외 7필 중 390,000천원
범위내에서 매입하고자 함.
- 재산의 표시 및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, 성명, 추정가액 등은 별지와 같음.
- 규 모 : 총면적 933ha, '99년도 매입 50ha (추정)
- 시 기 : '99상반기
- 취득가액 : 총 8,400,000천원, '99년도 390,000천원(추정)
- ※ 임야매입 후 필지별 매입현황 보고계획

5. 검토 의견
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결을 요하는 사안으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,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을 선정하지 않음에 따라 매입예정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사항 미비로 유보한 계획인 바, 재산의 표시 및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, 성명, 추정가액 등을 명기하여 도유림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